

## 간호사의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에 관한 연구

유 광 수(전북대학교 간호학과)

서 거 석(전북대학교 법과대학)

### 목 차

I. 서 론

II. 문헌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논의

V.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영문초록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질병이 다양화되고 병원이 복잡해지고 초대형화되면서 의료시장 형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상품개념의 도입과 함께 소비자 보호운동이 의료현장에 반영되어 과거 의료주권주의에서 환자 주권주의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간호분쟁의 증가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생명의 존엄성은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으며 단 한번의 실수도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간호사는 전문직으로서 생명에 관계되는 위기적인 한 장면이라는 특성인 위험이나 곤란에도 몸을 사리지 않는 인간으로서 권위(dignity of risk)가 전제되므로 간호사는 위험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이를 규명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한 책임과 의무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문국진,

1981).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식은 일회적인 정보제공이나 임박한 시기의 교육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전문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서 자신있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호사는 건강을 구축하는 중요한 전문인이면서도 간호사를 위한 단독법이 없기 때문에 간호와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알아야만 한다. 보건의료법규법령에 대한 지식은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간호업무에 대한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하게 하여 간호사고로 인한 간호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그 중에서도 의료법령은 의료에 관한 기본법령이므로 의료인인 전문직 간호사는 의료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자세히 알고 준수해야 한다. 의료법령은 의료에 관계된 모든 법령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의료에 관한 일반법인 의료법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의료법시행령 및 부령으로 제정된 의료법시행규칙에 한하여 의료법령의 범주로 하고 있다(전인덕, 1996).

현재 세계질서에 의한 외국대학의 개방으로 각 간

호대학, 간호학과에서는 최소학점을 인정하여 교과 과정 운영상 종래의 160학점에서 150학점, 140학점으로 학점을 줄이면서 전공필수이며 간호사 국시 과목인 보건의료관계법규과목을 첫번째로 없애고 있다.

이것은 법에 정해진 기본적인 간호업무의 범위와 기준,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을 알지 못하면서 간호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법제 지식 및 법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환자를 간호하게 되므로 법이 요구하는 간호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분쟁을 다양화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즉 간호사는 간호지식과 기술에만 능통하여서는 안되고 지켜야 할 의무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특히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문국진, 1983).

또한 간호사는 간호와 관련된 각종 법에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깊이 관여하고 참여하여서 주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간호사의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 지식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본 조사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 1) 간호사의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을 파악한다.
- 2)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에서 행정업무에 관련된 법지식, 환자관리업무에 관련된 법지식, 주사업무에 관련된 법지식, 투약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을 파악한다.
- 3) 변수에 따른 법지식의 차이점증을 파악한다.
- 4) 행정업무, 환자관리업무, 주사업무, 투약업무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II. 문헌고찰

### 1. 간호업무의 법적 분석

#### 가. 법률상의 간호업무

우리나라는 미국의 Nurse Licensing, Law Nurse Practice Act와 일본의 보건부, 조산부, 간호부를 위한 법과 같이 간호사를 위한 단독법이 없기 때문에 그 업무의 범위를 정확히 논의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의료법, 지역보건법,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임무, 의무 등을 근거로 한 간호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인출할 수 있다.

1)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환자의 질병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영양과 간호 그리고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보조하는 임무가 있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의료법시행령 제2조)

①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활동; 의료법 제25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는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속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는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검사행위, 환자의 이송,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예방접종과 위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의 투여 등이며 이외에도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의 지휘감독하에 환경시설 및 영양개선, 질병예방,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기타 주민의 보건의료 증진에 관한 업무를 다룰 수 있다.

② 모자보건법 제2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보건활동 및 가족계획 활동

③ 결핵 예방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이에 속하는 업무로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양호교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아동

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 등으로서의 업무와 기타 생활보호법 사회복지사업에 의거하여 간호사로서 행하는 보건활동 등이 있다.

3)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요양방법, 기타 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도(의료법 제22조); 모든 의료인은 위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지므로 의료인의 하나인 간호사도 이런 의무가 있어 의당 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질병요양의 방법과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의무가 있다.

4) 간호기록의 작성 및 보관(의료법 제2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17조 3항); 의료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간호기록부의 규정을 보면 ① 체온, 맥박, 혈압에 관한 사항, ② 투약에 관한 사항, ③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④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등을 간호기록부에 기재하기로 되어 있다.

①항과 ③항은 의사의 환자진찰을 위한 기본적인 진단행위로서 체온, 맥박 및 혈압에 관한 사항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②항의 투약과 ④항의 처치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막연히 표시되어 있어 해석에 따라 많은 차와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투약이라 하면 환자에게 상병의 치료를 위한 약물의 투여를 말하는 것으로 상당히 광범위하다(문국진, 1983).

나. 간호학상의 간호업무

1) 간호는 과학적인 일정한 원칙이 적용되는 과학인 동시에 기술로서 봉사의 이념을 행동화 하는 것이다.

2) 환자를 돌봄에 있어서 의사 또는 책임있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관련성을 가지고 일하는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에 노력한다.

3) 능숙한 간호관 환자의 신체와 정신뿐만 아니라 정서면까지를 돌보는 것을 말하며 진단과 치료행위는 간호에 속하지 않으나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투약과 치료를 한다(이귀향, 이영복, 1978).

다. 간호업무의 종합적 고찰

간호의 법률적인 간호학적인 업무내용과 범위를 법적으로 종합할 때 간호업무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환자의 요양, 간호 및 보건과 그

지도이며 다른 하나는 의사 진료의 보조행위이다. 전자는 간호사의 간호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범위내에서 독자적 판단으로서의 요양과 방법에 대한 지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며 후자의 환자에 대한 진료보조는 의사의 지시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독자적인 판단과 진료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업무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요양 및 간호와 그 지도)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진료시 보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한계와 그 책임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와 그 책임한계를 논함에 있어서 간호사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업무(환자나 그 가족에게 대한 요양과 간호 및 그 지도는 물론 이고 대중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사회봉사)에 속하는 사고에 대하여서는 사고의 원인적 행위자인 간호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간호사 독자적으로 행할수 없는 행위 즉 진료보조행위로 그 중에도 의사가 확인의무를 지니고 그의 감독하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는 언제나 지시한 의사에게도 책임이 귀결된다. 그러나 비독자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도 간호사로서 그 정도의 업무는 능히 행할수 있을 것으로 의사가 신뢰하고 지시한 것이라면 그 업무의 질과 내용에 따라 간호사 또는 의사가 때로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마. 간호업무의 법적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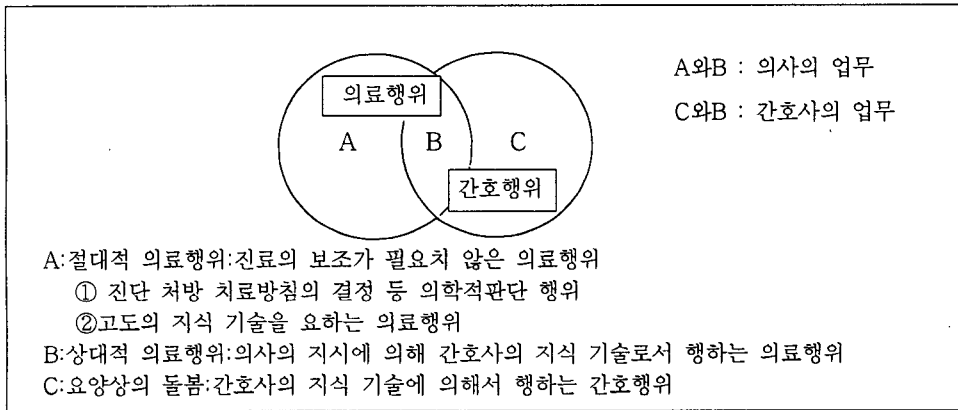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와 그 범위는 그림1과 같다. A는 절대적 의료행위로 ① 진료의 보조가 필요치 않은 의료행위로 진단, 처방, 치료방침의 결정 등 의학적 판단행위, ② 고도의 지식, 기술을 요하는 의료행위이다. B는 상대적 의료행위로 의사의 지시에 의해 간호사의 지식, 기술에 의해 행해지는 의료행위이다. C는 요양상의 돌봄(간호사의 지식, 기술에 의해 행해지는 간호행위)로서 A와 B는 의사의 의무이고 B와 C는 간호사의 의무이다[그림2 참조].

현재 의료상황을 검토 고찰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의사, 간호사의 독점업무로서 A는 의사의 절대적 의료행위이고 C는 간호사의 절

대적 간호행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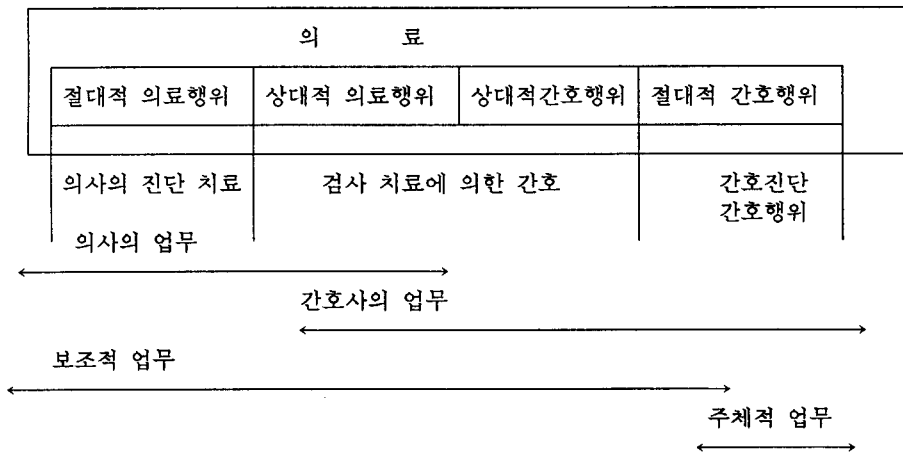
그리고 B에 해당하는 범위는 상대적 의료행위와 상대적 간호행위로서 구분할 수 있다. 진료 보조는 의사의 지시가 절대적 조건이나 시행할 경우에 간호사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간호의 질은 간호사의 독자적 영역이다. 그러나 이 영역은 상대적 간호행위로서 의사의 지시가 없어서는 안되므로 이 질적인 간호영역이 독자적인 업무로서 위치를 갖도록 간호의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

의 지시에 관한 조문은 의료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어 의료행위 금지와 진료보조에 대한 지시이다. 진료보조영역에 있어 행위결정은 의사의 지시가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만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상대적 간호행위에 있어 행위의 질에는 의사의 지시가 필요하지 않다. 이 간호의 질에 있어서 의료의 과오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간호사가 간호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石井トク, 1994).



(日本看護協會: 看護業務와 法的 責任 看護職의 社會經濟福祉에 關한 指針 醫療事故便, 2項, 日本看護協會 出版會, 1976)

[그림 1] 간호사의 업무



(石井トク : 看護業務의 法的 責任, 醫事法學 9, 1994)

[그림 2] 간호업무의 책임

## 2. 간호사의 의무에 관한 법리

의료인에게서는 의료계약과 동시에 이를 수행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의무는 의료의 성질상 민법의 규정이 주로 적용되며 그 외에 의료법을 위시한 여러 행정상의 의무가 따르게 된다. 의료계약을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묵계형식이 대부분이다.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행기간을 정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질병을 치료하고 싶다는 환자의 희망 즉 계약체결의 최종목적만 뚜렷할 뿐 그 가능성의 유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등의 계약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계약 내용은 결국 의료인이 자유로이 결정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의료에 관한 환자의 생사의 열쇠는 의료인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 동의의무

과거에는 의료인이 지닌 면허가 의료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는데 충분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면허만으로는 부족하고 특히 위험이 내포된 의료라면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 만일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것은 전단적 의료행위가 되어 결국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의료행위에 한해서는 면허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동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정당화 시키는 적극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의료행위를 외형적으로만 관찰하면 자기보존권에 대한 침습행위로서 형법상으로는 상해에 해당하며 민법상으로는 권리(신체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의료행위가 합법적 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의 이양 즉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또 동의는 참된 동의여야 하며 참된 동의란 모든 사항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환자가 충분히 납득한 후에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동의를 말한다. 따라서 설명이 없거나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착오동의, 그 위험성을 축소시켜 설명하여 얻은 동의, 환자가 의료인의 감정을 상할 것을 우려하여 한 동의 또는 의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나 미성년자에게서 얻은 동의 등은 무효

로서 전단적 의료가 성립되는 셈이다

### (1) 동의의 종류

#### ① 묵시동의

환자가 병원에 오거나 진찰권을 구입하는 것은 의료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진단을 위한 물리적인 진찰과 각종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검사, 간단한 의료 및 투약 등의 초보적인 의료에는 이미 동의한 묵시성이 포함되어 있는 묵시동의(implied consent)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일일이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 ② 명시동의

명시동의란 의료에 앞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에 그 시행여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여 명확한 답을 얻는 것이다. 법에 일정한 규정은 없으나 후일을 위하여 문서화 하는 것이 좋으며 구두의 경우라면 진료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두는 방법이 유효하다.

### (2) 동의를 요하는 범위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를 의뢰한 이상 그 의료에는 현대 의료수준으로서의 수단과 방법 및 기술과 경험으로 시행하여 달라는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묵시동의인 것이다. 따라서 개개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그 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일일이 환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즉 의료계약에는 포괄적인 동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약품명, 사용방법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일일이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의료행위의 성질상 환자의 생명 및 신체에 상당한 침해가 야기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세한 설명을 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위험 등을 동반하는 수술,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주사제 또는 약물의 투여, 마취, 수혈 등과 이에 준하는 부작용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시술 및 처치 때에는 그 범위 방법 등을 이해시키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동의의 구체적 사항>

① 해당의료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것이 표시될 것

㉞ 병상의 정도, ㉟ 예후(치료될 가능성), ㊱ 합병증의 종류 특히 위험을 동반하거나 후유증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 및 그 빈도

② 해당 의료행위는 동의권자(환자)가 충분히 납득한 후에 동의하였다는 것이 표시될 것.

### 2) 주의의무

간호과오로 인한 법적 책임에는 간호사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데 그 과실판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이다.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서 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가한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추궁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주의의무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사전에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주의의무에는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가 있다.

#### (1) 결과예견의무

결과예견의무란 예견가능성이 있는 범위내에서만 추궁되며 예견가능성이란 일반인이라면 행위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간호사는 간호학의 발달에 따르는 새로운 지식, 기술을 습득하여 간호사가 실시한 간호행위에 있어서 그 시점의 수준에 달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간호수준으로 보아 위험 또는 나쁜 결과가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예견의무는 자동적으로 부과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견의무가 있다.

①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라 할지라도 일반 간호사에게 알려진 상태의 것이라면 예견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② 일반 간호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단계라 할지라도 간호사가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라면 예견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③ 하여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검사 또는 수술전 검사법이 확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결과회피의무 추궁에 있어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임상상의 관례와 동의무가 경합될 때이다. 예를 들

어 환자에게 페니실린을 주사하는 경우 과민성 여부를 알기 위하여 예비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과민성 쇼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비검사에서 음성으로 반응한 사람 가운데서도 쇼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잘 아는 의료인들은 이를 무시하는 것이 임상적인 관례이다. 그러나 법은 이를 주사할 때 마다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의무 추궁에 있어서 예견가능한 범위내에서 예견의무, 또 그 시점에서 예견가능성을 해소시킬 정도의 회피수단을 다하였더라면 이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 (2) 결과회피의무

예견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시킬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위험이 발생되었더라도 이를 회피시켜 환자에게 아무 손해도 입히지 않았다면 비록 예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실무에 있어서는 예견가능성보다 결과 회피조치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대 의학이나 간호학의 지식과 기술로 회피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다. 따라서 결과회피의무는 회피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회피가능한 위험에 까지 의무가 있다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문국진, 1983).

간호사가 간호행위에서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일반 간호사로서 가져야 할 간호학상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주의이다.

간호사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예를 들면

#### ① 주사에 관한 의무

소독, 주사약의 확인, 주사부위 확인, 주사후 처치, 주사기술상의 주위 등이 있다.

#### ② 약제투여시의 주의

약제확인, 복용방법의 설명

#### ③ 수혈수액에 관한 주의

소독, 주입속도, 입회, 간호

#### ④ 수술에 관한 주의

소독, 체내의 가제, 가위 등을 남기지 않도록 조심한다.

⑤ 병실간호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병실의 화재 등 안전관리에 주의하면서 환자를 성심성의껏 간호하여야 한다

연구대상자는 1992년 5월 1일에서 1992년 7월 31일까지 전라북도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 2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확인의무

간호의 내용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간호조무사의 제도가 실시되어 이들의 협조로 간호가 원만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간호의 주체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의 모든 면은 간호사가 확인하여야 한다. 즉 간호사의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과실이 비록 행위자인 간호조무사에게 있고 간호사에게는 구체적 과실사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들을 지도 감독하고 그 행위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실에 대한 확인을 태만히 한 책임을 추궁받게 되는것이다.

사용약품 및 재료에 대한 확인의무는 사용하는 의료인에게 있다.

(1) 의약품 및 재료의 변질여부 확인한계

① 의약품 및 기자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간호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② 피투여자의 확인
- ③ 투여 또는 사용의 필요성 및 시기의 확인
- ④ 의약품의 확인

(2) 수혈용 보존혈액의 오염여부의 확인한계

세균으로 오염된 보존혈액을 수혈 전에 의료인이 확인 가능한 한계로 변색이나 점도의 변화와 같은 육안적인 변화이상이다

(3) 의료기구 및 장비의 사용 전 확인의무의 한계  
의료기구 및 장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특히 그것이 위험성을 내포하였거나 또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인은 이를 사용하기에 앞서 이의 안전성 및 정상 가동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간호사의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2개의 종합병원 간호사들에게 개방형 질문으로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을 사전 조사하였으며, 이 사전조사의 내용과 Law Every Nurse should know, 보건의료법규, 現代醫事法學을 토대로 행정업무영역, 환자관리업무영역, 주사업무영역, 투약업무영역을 포함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각 영역별 문항내용 및 점수는 ①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11문항 최고점 7점 최저점 0점, ② 환자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7문항 최고점 7점 최저점 0점, ③ 주사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7문항 최고점 7점 최저점 0점, ④ 투약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7문항 최고점 7점 최저점 0점으로 총점 32점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의 일반적 사항을 포함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를 2차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배열, 어귀 등을 수정하고 내용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법과대학 교수, 간호학과 교수, 간호사들에게 내용을 검토받아 수정 보완하였고 정답과 오답을 두루 배치하고 구성하여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평점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893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는 행정업무 관한 영역: .673, 환자관리업무에 관한 영역: .732, 주사업무에 관한 영역: .774, 투약업무에 관한 영역: .657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컴퓨터에 의해 집계 분석되었다. 일차적으로 각 변수의 단순빈도·백분율·표준편차 및 교차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하여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에 관한 네개 영역의 점수 및 종합점수가 산정되었다. 사용된 모든 통계처리방법은 SPSS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 IV. 연구결과 및 고찰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서와 같이 연령별은 21 - 30세 그룹이 59.3%, 31 - 40세 그룹이 29.6%, 41세 이상 그룹이 11.1%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5.7세로 나타나 결혼 등에 의해 직장을 그만두는 간호사도 있겠으나, 간호사라는 직업이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직율이 높다는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

구 분	인 원 수	비율(%)
<b>연 령</b>		
21 ~ 30세	160	59.3
31 ~ 40세	80	29.6
41세 이상	30	11.1
<b>학 력</b>		
간호전문대학	205	76.2
대학 간호학과	64	23.7
대학원	1	0.2
<b>결혼상태</b>		
미 혼	121	44.9
기 혼	144	53.5
기 타	5	1.6
<b>근무경력</b>		
5년	204	75.5
6-10년	33	12.3
11-15년	16	5.9
16년 이상	17	6.2
<b>근무병동</b>		
내과	62	22.9
일반외과	46	17.0
산부인과	39	14.4
소아과	41	15.2
정형외과,신경외과	24	8.9
안과,이비후과	13	4.8
응급실	16	5.9
수술실	21	7.8
합 계	270	100

<표 2>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 정도 (N=270명)

영 역	만 점	평 균	표준편차
행정업무	11	5.01	.65
환자관리업무	7	2.72	1.32
주사업무	7	3.84	1.21
투약업무	7	3.55	.98
전 체	32	17.24	2.35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학력은 간호전문대학 출신이 76.3%, 간호학과 출신은 23.7%를 나타냈다. 간호전문직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53.5%, 미혼이 44.9% 이었으며 근무경력은 5년인 그룹이 75.5%, 6-10년 그룹이 12.7%, 11-15년 그룹이 5.8%, 16년이상인 그룹이 6.5%로 나타났다. 근무병동은 내과병동이 22.9%로 가장 많이 근무하였다.

##### 2.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 정도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은 행정업무에 관련된 영역, 환자관리업무에 관련된 영역, 주사업무에 관련된 영역, 투약업무에 관련된 영역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간호사들의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 정도는 최대평점 32점에서 평균 17.24로 나타나서 대체로 낮은 지식 정도를 보였다. 간호사는 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의 법리는 물론이고 환자 및 의사와의 관계, 병원행정에 대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각 영역별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 정도를 보면 행정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은 최대평점 11점에 평균 5.01점이었고, 환자관리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은 최대평점 7점에 평균 2.72점, 주사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은 최대평점 7점에 평균 3.84점, 투약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은 최대평점 7점에 평균 3.55점으로 나타나서, 행정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이 평균 5.01로 가장 높고 환자관리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이 평균 2.7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간호사의 간호업무중에서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투약과 주사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투약과 주사업무는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간호사가 투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조제과정에 잘못이 있다 해도 투약하기 전에 간호사가 그 잘못을 발견하면 환자가 환원해서 회복할 수 있으므로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전인덕, 1996). 간호사가 이를 인식하여 주사 및 투약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행정업무에 관련된 법지식

행정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은 <표 3>에서와 같이 정답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을 수행시 환자에게 해가 없는한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한다.』가 94%였고 다음으로 높은 정답율을 나타낸 항목은 『간호사가 업무수행 중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법률상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가 85%였다. 정답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응급시설이 빈약하여 환자를 볼 수 없어 큰 병원으로 보냈는데 가는 도중 피를 많이 흘려 사망한 경우에는 작은 병원의 책임이다.』가 12%였고, 그 다음은 『일손이 달려 응급환자를 제때 돌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간호사에게도 민사 형사상의 책임이 있다.』가 16%였다. 의료법에 제정된 법규내용은 잘 알고 있으나 그외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환자관리업무에 관련된 법지식

환자관리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은 <표 4>에서와 같이 『간호사가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치료를 돕는 것이다.』 87%, 『수술시 수술승낙서를 받았다면 환자가 사망해도 법률상 책임이 면제된다.』 85%로 비교적 높은 정답율을 나타냈으나 『환자가 침대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병원의 과실이다.』는 11%로 낮은 정답율을 나타냈다.

문(1983)은 의료기자재를 환자에게 사용할 때 그것이 위험성을 내포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

<표 3> 행정업무에 관련된 법지식

항 목	정답 (%)	오답 (%)
1.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말한다	77 (29)	193 (71)
2. 간호사가 업무수행중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법률상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185 (69)	85 (31)
3. 영리를 목적으로 교통사고 환자를 정형외과 의원에 알선하더라도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191 (75)	69 (25)
4.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경력등을 고교 동창회보에 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183 (68)	87 (32)
5. 환자가 많아서 바쁠때는 개인병원의 사무장도 의료 행위를 거둘 수 있다.	229 (85)	41 (15)
6.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을 수행시 환자에게 해가없는 한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한다	253 (94)	17 (16)
7. 손이 달려 응급환자를 제때 돌보지 못하여 사망하였을 때 간호사에게도 민사 형사 책임이다	181 (67)	89 (11)
8. 병원에 채용되면 어떤 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56 (21)	214 (79)
9. 간호사 행위는 전적으로 의사의 책임이다	155 (57)	115 (43)
10. 간호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뿐만아니라 형사상의 책임도 져야 한다	234 (87)	36 (13)
11. 응급시설이 빈약하여 환자를 볼 수 없어 큰 병원으로 보냈는데 가던 도중에 피를 많이 흘려 사망한 경우에는 작은 병원의 책임이다	33 (12)	236 (78)

우 간호사는 사용에 앞서 그 안정성 및 정상가동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만일 이를 확인하지 않아 불상사가 야기되었다면 응분의 책임이 간호사에게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병원당국은 의료기자재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을 미리 방지하

<표 4> 환자관리업무에 관련된 법지식

항 목	정답 (%)	오답 (%)
1. 검사,투약,수술 등에 있어서 다소간 과잉진료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률상 별 문제가 없다.	181 (67)	89 (33)
2. 수술시 수술승낙서를 받았다면 환자가 사망해도 법률상 책임이 면제된다.	230 (85)	40 (15)
3. 간호사가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환자치료를 돕는것이다.	234 (87)	36 (13)
4. 중환자실 환자가 침대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병원의 과실이다.	30 (11)	240 (89)
5. 산후출혈이 있는 환자를 의사에게 연락하지 않아 사망한 것은 간호사의 과실이며 이를 채용한 병원에도 책임이 있다.	183 (68)	87 (32)
6. 환자가족의 의사 진료요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한 것은 간호사의 주의의무위반이다.	125 (46)	145 (54)
7. heating pad의 과열로 환자가 화상을 입은 것은 간호사의 부주의이다.	127 (47)	143 (53)

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점검하여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병원에 있다고 하였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환자를 관리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간호하여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투철한 직업의식을 갖고서 간호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자관리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을 알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주사업무에 관련된 법지식

주사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은 <표 5>에서와 같이 가장 높은 정답율을 보인 항목은 『일회용으로 제조된 주사기 및 주사침을 사용하여 화농한 것은 의사, 간호사의 과실이라고 할수 없다.』 71%였고, 그 다음은 『의사가 있는 가운데 간호사가 주사약을 잘못 선

<표 5> 주사업무에 관련된 법지식

항 목	정답 (%)	오답 (%)
1. 주사액을 주사기에 충전할때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다.	77 (29)	93 (71)
2. 의사가 있는 가운데 간호사가 주사약을 잘못 선택하여 다른 것을 주사하여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책임은 공동으로 져야한다.	115 (80)	55 (20)
3. 위험을 동반하는 주사를 간호사에게만 위임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의사도 책임이 있다.	237 (88)	33 (12)
4. 간호사가 주사하여 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생긴 경우 환자의 손해배상은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82 (30)	188 (70)
5. 간호사가 주사한 것이 신경마비 또는 근위축 등과 같은 것이 야기되었어도 병원은 배상책임이 있다.	67 (25)	203 (75)
6. 간호사의 주사과실로 환자에게 후유증이 생겼다 해도 배상책임은 병원개설자에게 있다.	40 (15)	230 (85)
7. 일회용으로 제조된 주사기 및 주사침을 사용하여 화농한 것까지 의사 또는 간호사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193 (71)	87 (19)

택하여 다른 것을 주사하여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책임은 공동으로 져야 한다.』 43%, 『위험을 동반하는 주사를 간호사에게 일임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의사도 책임이 있다.』 43%였다. 정답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간호사의 주사과실로 환자에게 후유증이 생겼다 해도 배상책임은 병원개설자에게 있다.』 가 15%였다

주사로 약물을 투여할때는 대부분 간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강 등의 연구(강윤희, 이은옥, 1985)에 의하면 간호사의 업무중 주사는 간호사 588명이 1日 2,104회를 하고 있어서 간호사의 간호업무중 막중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사업무가 안전하

지 못하면 여러 가지 원하지 않은 부작용과 합병증 및 후유증을 남겨 법적인 문제로 정당성 여부의 판가름이 적지 않다고 하였다(문국진, 1985).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주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사약의 확인(처방대로의 주사약인지의 여부), 주사분량의 확인(처방대로 분량인지의 여부), 주사부위 및 방법의 확인(처방 지시된 방법과 주사하려는 부위가 적합한지의 여부), 세균감염 위험성의 유무(주사기는 물론 시주자의 손가락 주사부위등이 세균감염의 우려가 없을 정도로 소독되었는지의 여부와 주사약의 혼탁, 점조도의 변화, 색깔, 냄새의 이상)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문국진, 1983).

간호사의 주사기술 과오로 화농과 같은 합병증이나 신경마비 등과 같은 후유증을 남긴 경우에 간호사의 과실이 입증되면 간호사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나 민사책임은 병원개설자에게 있다. 그 이유는 사용자 책임에 의한 것이다(문국진, 1983).

### 6. 투약업무에 관련된 법지식

투약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의 정도는 <표 6>에서와 같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들의 투약업무에 관련된 법지식 정도에서는 『어린이 환자에게 정제를 투여하여 질식케 한 것은 의사 및 간호사에게 책임이 있다.』 94%, 『미숙아에게 처방보다 고농도인 산소를 투여하여 사람이 사망한 것은 간호사의 과실이다.』 89%, 『의사의 지시보다 고농도인 석탄수소량을 분무 소독하여 사람이 죽으면 간호사의 과실이다.』 87%, 『간호사가 비슷한 글씨로 약을 잘못투여하면 간호사의 책임이다.』 87%, 『의사의 지시대로 혈압강화제를 투여하지 않아 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간호사의 과실이다.』 79%순으로 정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법지식 차이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의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의 차이검증은 <표 7>과 같다. 연령이 많을수록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은 높은 점

<표 6> 투약업무에 관련된 법지식

항 목	정답 (%)	오답 (%)
1. 어린이 환자에게 정제를 투여하여 질식케한 것은 의사 및 간호사에게 책임이 있다.	253 (94)	17 (16)
2. 간호학생이 단독으로 어린이에게 정제를 투여하여 질식케 한 것은 의사의 과실이며 의사도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	188 (70)	82 (30)
3. 의사의 지시보다 고농도인 석탄수소량을 분무 소독하여 사람이 죽으면 간호사의 과실이다.	234 (87)	36 (13)
4. 미숙아에게 처방보다 고농도인 산소를 투여하여 사람이 사망한 것은 간호사의 과실이다.	240 (89)	30 (11)
5. 의사의 지시대로 혈압강화제를 투여하지 않아 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간호사의 과실과 관계가 있다.	213 (79)	57 (21)
6. 간호사가 마약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마약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된 경우에는 간호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	125 (46)	145 (54)
7. 간호사가 비슷한 글씨로 약을 잘못 투여하면 간호사 책임이다.	136 (50)	134 (50)

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의의가 있다고 나타났다( $F=4.046, p=0.039$ ).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에 대한 정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학력은 간호전문대 졸업한 경우가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의는 없었다.

대상자의 결혼상태는 기타 즉 이혼이나 별거인 경우가 점수가 높고 미혼인 경우가 낮았고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었다( $F=4.4794, p=0.002$ ). 이는 결혼후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법률에 접하는 기회가 많다 보니 간호사가 자신의 간호업무에 대해 법적인 권리나 의무에 관심을 기울여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근무경력에 경력의 많을수록 간호업무에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법지식 차이 검증

인구학적 특성	구분	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자유도	F / t	P 값
연령	21-30	160	13.76	2.13	8-32	267	4.0216	0.039*
	31-40	80	13.95	2.05	5-31			
	40세이상	30	14.04	2.07	5-30			
학력	간호전문대	206	13.89	2.11	6-31	268	0.8730	0.478
	대학 간호학과	64	13.52	1.88	7-32			
결혼상태	미혼	121	14.12	2.02	5-31	267	4.4794	0.022**
	기혼	144	14.50	2.12	6-30			
	기타	5	14.84	2.67				
근무경력	5년이내	204	13.58	2.09	7-32	265	3.5876	0.000**
	6-10년	33	13.80	2.24	5-30			
	11-15년	16	13.97	2.27	6-29			
	16년이상	17	14.03	1.88	5-31			
근무병동	내과	62	13.92	2.14	6-30	262	5.1456	0.000**
	일반외과	46	13.45	2.10	5-31			
	산부인과	39	13.67	2.18	6-32			
	소아과	41	13.96	2.12	5-30			
	정형외과, 신경외과	24	14.25	2.10	6-31			
	안과, 이비후과	13	13.25	2.09	4-29			
	응급실	16	16.00	2.15	7-32			
	수술실	21	13.00	2.11	5-30			

주 : \*p<0.05, \*\*p<0.01

관련된 법지식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게 나타났다(F=3.5876, p=0.0000). 이는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아질수록 자기업무에 대한 의식과 주장에 대한 확신이 뚜렷한 경우라 생각한다.

대상자의 근무병동은 응급실 간호사가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정형외과·신경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였다. 근무병동에 따른 간호사의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은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게 나타났다(F=5.1456, p=0.0000).

응급실은 특히 응급에 처한 경우가 많고 또는 위 기상항에 대한 위기위식이 있으므로 본인의 간호업무에 철저히 대응하고 또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한계를 명확히 알고 수행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8. 행정업무, 환자관리업무, 주사업무, 투약업무 간의 관계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업무와 환자관리업무(r=3974, p=.0000), 행정업무와 주사업무(r=.4530, p=.0000), 환자관리업무와 주사업무(r=.176, p=.014), 주사업무와 투약업무(r=.672, p=.000)들이 모두 순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간호사의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은 행정업무, 환자관리업무에 있어서 독립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이 한 영역에 대해 알고 있으면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알고자 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표 8> 행정업무, 환자관리업무, 주사업무, 투약업무간의 상관관계

	행정업무	환자관리업무	주사업무	투약업무
행정업무	1.0000	.3974 (p=.000)	.4530 (p=.000)	.3782 (p=.000)
환자관리업무		1.0000	.1763 (p=.014)	.0258 (p=.273)
주사업무			1.0000	.6072 (p=.000)
투약업무				1.0000

## V. 요약 및 결론

간호사들의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을 알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를 전라북도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 270명을 대상으로 1992년 5월 1일부터 1992년 6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개방형 질문으로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을 사전조사한 내용과 Law Every Nurse should know, 보건의료법규, 現代醫事法學을 토대로 행정업무에 관련된 법지식, 환자관리에 관련된 법지식, 주사업무에 관련된 법지식, 투약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으로 분류하여 수정 보완하여 타당도,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후 이용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빈도, 백분율, 평균치,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ANOVA를 적용하였다.

주요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이 21~30세 미만군이 69.3%, 학력은 간호전문대학 졸업군이 76.3%, 근무경력은 5년이내군이 75.5%, 근무병동은 내과병동이 62%를 차지하였다.

2.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에서는 최대평점 32점에서 평균 17.24를 나타냈다. 각 영역별에서는 행정업무는 최대평점 11점에서 평균 5.01점, 환자관리업무는 최대평점 7점에서 평균 2.72, 주사업무는 최대평점 7점에서 평균 3.84, 투약업무는 최대평점 7점에서 평균 3.55으로 나타났다.

3. 행정업무에 관련된 법지식 정도는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을 수행시 환자에게 해가 없는 한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한다.』가 94%로 가장 높았다.

4. 환자관리업무에 관련된 법지식 정도는 『간호사가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치료를 돕는 것이다.』가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주사업무에 관련된 법지식 정도에서는 『일회용으로 제조된 주사기 및 주사침을 사용하여 화농한 것을 의사 간호사의 과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 71%로 가장 높았다.

6. 투약업무에 관련된 법지식 정도에서는 『어린이 환자에게 정제를 투여하여 질식케 한 것은 의사 및 간호사에게 책임 있다.』가 94%로 가장 높았다.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 차이검증은 간호사의 연령( $p<0.05$ ), 결혼상태( $p<0.05$ ), 근무경력( $p<0.01$ ), 근무병동(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8. 행정업무, 환자관리업무, 주사업무, 투약업무간의 관계에서는 모두 순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 제 언

1. 간호학 교과과정 운영상 보건의료법규 과목은 간호사 국시과목으로서 전공필수로서 배워야 한다.

2. 시대적 사항이므로 간호사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변화에 따른 간호업무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문직 간호단체를 통하여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인 측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간호사들에게 간호사의 법적 책임한계, 의료인 상호간의 법적책임관계 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이숙자, 간호사고 문제와 과실 경험도에 관한 조사 연구. 생활간호 제 권 호

문국진(1980), 간호와 관련된 판례와 그 문제점의 법의학적 고찰. 대한간호, 20(2):15-36

이영자(1980), 의료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 19(3):6-9

문국진(1985), 간호법의학, 고려대학교 법의학 연구소

조미자(1992), 간호관계 법령의 변화추이 분석, 연세대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수문의학연구회(1997), 보건의료관계법규, 수문사

전인덕(1996), 투약업무에 있어서 간호사의 주의 의무(혈관주사를 중심으로). 생활간호, 20(6):166-176

문국진(1983), 간호업무의 법의학적 고찰. 대한간호 22(4):6-12

전인덕(1996), 간호과오의 법리와 마취사고 예방책(마취간호를 중심으로). 생활간호, 20(2):155-165

문국진(1979), 투약과 주의의무, 제3회 법의학 월례 집담회요지

최중현(1975), 검사가 본 주사행위. 대한법지의, 2(1):27

문국진(1978), 주사사고의 외국현황. 대한법지의, 2(1):13

강윤희, 이은옥(1978), 간호업무상에서의 주사실태. 대한법지의, 2(1):119

전경애(1981), 간호사를 중심으로한 법의학(간호사고의 예방과 안전관리). 대한간호, 20(2):48-51

김주희(1980), 간호 단독법의 필요성. 대한간호, 19(3):21-24

한철우(1983), 간호관계령 어떻게 달라졌나(의료법

을 중심으로). 대한간호, 22(1):14-18

문국진(1979), 판례를 통한 경구투약 및 주사의 법의학적 고찰(Ⅲ). 고려의대 논문집, 16(2)

이순복(1996), 간호사고 예방과대책. 생활간호, 20(4):47-51

신정숙(1996), 간호사고 유형과 예방책. 생활간호 20(11):20-24

송말순(1996), 간호사고와 법적책임. 생활간호, 20(11):25-31

전인덕(1996), 환자 관찰에 있어서 간호사의 주의 의무. 생활간호, 20(8):118-123

전인덕(1996), 수술동의서는 무엇을 의미한가. 생활간호, 20(5):118-135

金川雄(1992), 現代醫事法學, 金原出版株式會社

高田利廣(1983), 看護の安全性と法的責任, 第1-5集 日本看護協會出版會, 東京

菅野耕端(1994), 看護事故と法的責任. 醫事法學 9

川村佐和子(1994), 護の専文性. 醫事法學 9

草刈淳子, アメリカにおける看護婦の法的責任.

石井ト(1994), 看護業務の法的責任 醫事法學 9

正平(1994), フランスの自由開業看護制度に見る看護の獨立的専門性 法的責任. 醫事法學 9

名古屋辯護士會編(1992), 手術同意書に關する研究報告書ふれあい企劃. 名古屋

金川雄(1992), 醫療事故と診療録の開始をめぐる問題. 看護 MOOK 8-9, 145項 金原出版 東京

Cartwright, B.C. & Schwartz, r.D.(June 1973). The Innvocation of Legal Norms, An Empirical Investication of Durkheim and Weber. Am. Social Rev., 38:340, 341

New York American Nurse's Association (Jan 1958), Principle of Legislation Relation to Nursing Practice: Rev.

Trandel-Koren chuk, D.M., et al.(Spring 1981). Current Legal Issues Facing Nursing Practice, Nurs. Admin. Q.:77-80

Swafford, W.B.(1966), Legal Aspects of Drug Distribution and Administration. Hosp. Management, 102-64

Creighton, H.(July 1980), Nurses and

Malpractice Law, Part I Superior Nurse  
11:36-37  
Creighton, H.(Aug. 1980), Nurses and  
Malpractice Law, Part II Superior Nurse  
11:14-46  
Lesnik, J. & Anederson, B.E.(1962), Nursing

Practice and The Law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 p.260  
Ednas, Kulikowski, A Study of Accidents in a  
Hospital, Superior Nurse  
Helen Crepghton(1986), Law every Nurse  
should Know, W.B. Saunders Company,

= ABSTRACT =

## A Study on Law Intelligence in regard to Nursing Duty of Nurse

**Kwang Soo You**(Dept. of Nursing, Chon Buk National University)  
**Geo Suk Seo**(College of Law, Chon 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et grasp the law intelligence related to nursing duty of nurse in order to estimate a degree of mangement duty, patient mangement duty, injection duty, medication duty that nurse have. This paper made a survey of 270 nurses who were employed in general hospital of Chon-ju city. Questionnaire were composed 32 items through four dimension.

The result of this survey showed that as follow :

1. Law intelligence related to nursing duty was expressed mean score 17.24 score in maxim score 32 score, mangement duty mean score 5.01 score in maxim score 11 score, patient mangement duty mean score 2.72 score in maxim score 11 score, injection duty mean score 3.84 score in maxim score 7 score, medication duty mean score 3.55 in maxim score 7 score of each domain
2. Relationships of mangement duty, patient mangement duty, injection duty, medication duty were expressed to progressive relationship of all.
3. Correlation between general features and law intelligence related to my duty.